

2021년 7월 경상남도 반사회 홍보목록

| 연번 | 홍보내용 | 담당부서 | 페이지 |
|----|--------------------------------|---------|-----|
| 1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안내 | 감염병관리과 | 1 |
| 2 | 2021년 7월 전면 시행 자치경찰제도 안내 | 자치경찰총괄과 | 8 |
| 3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 일자리경제과 | 14 |
| 4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 건축주택과 | 16 |
| 5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 안내 | 건축주택과 | 18 |
| 6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토지정보과 | 19 |
| 7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토지정보과 | 21 |
| 8 |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 토지정보과 | 23 |
| 9 |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 시행 | 해양항만과 | 24 |
| 10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안내 | 환경정책과 | 27 |
| 11 | 도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오존 행동 요령 안내 | 기후대기과 | 33 |
| 12 | 미세먼지 비상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 기후대기과 | 35 |
| 13 | 한우산업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추진 및 홍보 | 축산과 | 37 |
| 14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 동물방역과 | 39 |
| 15 |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서비스 안내 | 법무담당관 | 41 |
| 16 | 디지털 배움터(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안내 | 정보담당관 | 44 |
| 17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안내(경남스마트쉼센터) | 정보담당관 | 45 |
| 18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 건설지원과 | 46 |
| 19 | 태풍 등 풍수해 발생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 자연재난과 | 48 |
| 20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행정과 | 51 |
| 21 | '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 시행 안내 | 가족지원과 | 54 |
| 2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안내 | 가족지원과 | 57 |
| 23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방법 등 안내 | 아동청소년과 | 59 |
| 24 | 에너지 절약하고, '경남사랑상품권' 받아주세요! | 에너지산업과 | 62 |
| 25 | 경남 마산 로봇랜드 방문·이용 및 홍보 협조 | 전략사업과 | 6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안내

(자료제공: 복지보건국 감염병관리과 ☎ 055-211-764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 행동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 일반 국민 예방행동수칙은?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 항상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요 Q&A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1 : 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곤란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2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A3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사람이 약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4 : 백신은 2021년 2~3월부터 단계적 시행 중입니다. 3분기까지 일반 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정도에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백신공급, 접종시행, 접종 후 관리 등 단계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5>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5 : 아직 완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6> 검사를 받을 대상과 장소는 어디인가요?

A6 : 의사환자(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으로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7>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7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 및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 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접촉자가 되면,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

- 운영기간 : ’21. 7. 24.(토) ~ 8. 24.(화) / 1개월(30일간)
- 검사대상 : 검사 희망자 누구나 검사 가능(익명 검사 가능)
- *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유증상자 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검사를 권고

| 연번 | 구 분 | 임시선별검사소 | 주 소 | 운영시간 |
|----|-----|------------------|-------------------|---|
| 1 | 창원시 |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광장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 (평일, 휴일)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 2 | 진주시 | 청소년수련관 | 진주시 남강로651번길 12 | |
| 3 | 김해시 | 진영공설운동장 |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57 | |
| 4 | | 동부치매안심센터 |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8-35 | |
| 5 | 양산시 | 물금읍보건지소 | 양산시 물금읍 황사로 391 | |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 연번 | 구 분 | 선별진료소 | 검체 채취 | 주 소 | 연락처 | 비 고 |
|----|-----|------------|----------|-----------------------|--------------|---------|
| 1 | 창원시 | 창원보건소 | ○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 | 055-225-4281 | |
| 2 | | 마산보건소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 055-225-5941 | |
| 3 | | 진해보건소 | ○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 055-225-6101 | |
| 4 | 진주시 | 진주시보건소 | ○ |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 055-749-5714 | |
| 5 | 통영시 | 통영시보건소 | ○ | 통영시 안개4길 108(무전동) | 055-650-6055 | |
| 6 | 사천시 | 사천시보건소 | ○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 055-830-3620 | |
| 7 | 김해시 | 김해시보건소 | ○ | 김해시 분성로 227(외동) | 055-330-4481 | |
| 8 | 밀양시 | 밀양시보건소 | ○ | 밀양시 삼문중앙로 41(삼문동) | 055-359-7015 | |
| 9 | 거제시 | 거제시보건소 | ○ | 거제시 수양로 506(양정동) | 055-639-6000 | |
| 10 | 양산시 | 양산시보건소 | ○ | 양산시 삼량로 169(중부동) | 055-392-5220 | |
| 11 | 의령군 | 의령군보건소 | ○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 055-570-4040 | |
| 12 | 함안군 | 함안군보건소 | ○ |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 055-580-3113 | |
| 13 | 창녕군 | 창녕군보건소 | ○ |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35 | 055-530-6217 | |
| 14 | 고성군 | 고성군보건소 | ○ |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 055-670-4088 | |
| 15 | 남해군 | 남해군보건소 | ○ |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 055-860-8740 | |
| 16 | 하동군 | 하동군보건소 | ○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 055-882-4000 | |
| - | 산청군 | (산청군보건의료원) | | | | 의료기관 분류 |
| 17 | 함양군 | 함양군보건소 | ○ |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 055-960-8040 | |
| 18 | 거창군 | 거창군보건소 | ○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 055-940-8335 | |
| 19 | 합천군 | 합천군보건소 | ○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 055-930-3683 | |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 연번 | 시군명 | 선별진료소명 | 검체 채취 | 주 소 | 연락처 |
|----|-----|-------------|----------|------------------------|--------------|
| 1 | 창원시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11 | 055-214-1000 |
| 2 | | 한마음병원 | ○ |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 055-225-0000 |
| 3 | | 파티마병원 | ○ |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 055-270-1020 |
| 4 | | 삼성창원병원 | ○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 055-233-6121 |
| 5 | | 마산의료원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 055-249-1116 |
| 6 | | SMG연세병원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 055-240-7777 |
| 7 | | 진해연세에스병원 | ○ |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 055-240-7777 |
| 8 | | 진해세광병원 | ○ |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55-1 | 055-540-3700 |
| 9 | 진주시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 진주시 강남로 79 | 055-750-8939 |
| 10 | | 진주제일병원 | ○ | 진주시 진주대로 885 | 055-756-2900 |
| 11 | | 진주고려병원 | ○ | 진주시 진주시 동진로 2 | 055-751-2525 |
| 12 | | 진주반도병원 | ○ | 진주시 남강로 701 | 055-749-0200 |
| 13 | | 진주복음병원 | ○ | 진주시 진양호로 370 | 055-749-7119 |
| 14 | | 진주세란병원 | ○ | 진주시 진주대로 829 | 055-760-7575 |
| 15 | | 진주한일병원 | ○ | 진주시 범골로 17 | 055-750-1333 |
| 16 | 통영시 | 통영적십자병원 | ○ | 통영시 중앙로 97 | 055-644-8901 |
| 17 | 사천시 | 삼천포서울병원 | ○ | 사천시 남일로 33(동금동) | 055-830-9009 |
| 18 | | 삼천포제일병원 | ○ | 사천시 중앙로 136 | 055-830-2965 |
| 19 | 김해시 | 김해중앙병원 | ○ |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 055-330-6007 |
| 20 | | 조은금강병원 | ○ |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 055-330-0392 |
| 21 | | 갑을장유병원 | ○ |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 055-310-6114 |
| 22 | 밀양시 | 밀양윤병원 | ○ | 밀양시 삼문중앙로 32 | 055-354-2200 |
| 23 | 거제시 | 거봉백병원 | ○ | 거제시 계룡로5길 14 | 055-733-0188 |
| 24 | | 거제대우병원 | ○ | 거제시 두모길16 | 055-680-8119 |
| 25 | | 맑은샘병원 | ○ |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 055-736-1004 |
| 26 | 양산시 | 양산부산대병원 | ○ |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 055-360-3366 |
| 27 | | 베데스다병원 | ○ | 양산시 신기로 28 | 055-384-9901 |
| 28 | | 웅상중앙병원 | ○ | 양산시 서창로 59 | 055-912-0119 |
| 29 | 의령군 | 의령병원 | ○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10 | 055-573-4100 |
| 30 | 함안군 | 영동병원 | ○ | 함안군 칠원읍 용산2길 45-13 | 055-586-2000 |
| 31 | 창녕군 | 한성병원 | ○ | 창녕군 창녕읍 교리1길 2 | 055-530-5119 |
| 32 | 남해군 | 남해병원 | ○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69 | 055-863-2201 |
| 33 | 산청군 | 산청군보건의료원 | ○ |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 055-970-7582 |
| 34 | 함양군 | 함양성심병원 | ○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70 | 055-963-4322 |
| 35 | 거창군 | 거창적십자병원 |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 055-944-3251 |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일반국민 10대 수칙'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01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 0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0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 0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0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0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0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 0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0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확인하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름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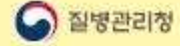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2021.4.16



우리 일상에 다시 봄이 올 때까지

방역은 '지금처럼'

다시, 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야외 활동 방역수칙

기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



환기, 소독 자주하고
공용물품 사용 자제하기

야외활동 방역수칙



- ① 함께 사는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기
- ② 마스크 쓰기 어려운 과격한 활동 자제하기



- ③ 구호, 노래 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하지 않기
- ④ 공용공간(공중화장실 등) 사용 최소화하기



- ⑤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하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기

의심증상이 있다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1339에서 상담 받으세요

2021년 7월 전면 시행 자치경찰제도 안내

(자료제공: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211-0925)

□ 도입목적

- (주민치안) 민생치안 담당(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자치경찰 도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도민체감 치안서비스 제공
- (자치분권) 시·도에 자치경찰사무의 책임·지휘권 부여로 현행 경찰조직체계를 유지하며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 확보

□ 도입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법」 전부개정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

- (사무) 경찰사무를 국가·수사·자치경찰로 구분
 - 지역 내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일부)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
- (조직)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경남경찰청 개편
 - 자치경찰사무 관장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신설
 - 경남지방경찰청이 경남경찰청으로 변경, 자치경찰부(부장:경무관) 신설 등 필요한 기구 및 인력 증원
- (지휘)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 자치경찰사무는 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로 경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
- (인사) 도지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일부 임용권
- (예산) 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수행 예산 수립, 국가는 재정적 지원



안전한 경남

자치경찰

무엇이든 물어보살



Q. 어떤 것들이 좋아지나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됩니다



Q.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되는 건 아닌가요?



**치안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목적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치안의 전문성이 더 높아집니다

Q.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신고는 112 그대로!



사건발생 시, 국가·자치경찰 상관없이
가까운 경찰이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게 됩니다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

자치경찰제로
함께 만들어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자료제공: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211-3316)

도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한 고용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1. 1. 1. 이전 도내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요건) '21. 1. 1. 이후 고용보험 신규취득 노동자 및 사업주

① (기업요건) 2020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② (소득요건) 월 평균소득 **220만원 미만**

*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불한 보수(세전 기준)의 월 평균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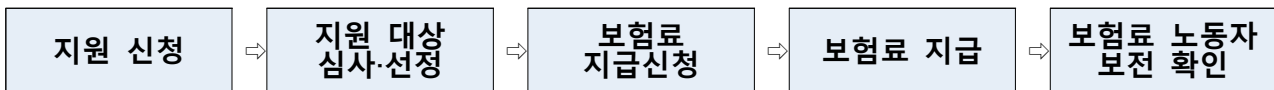
③ (시기요건) '**21.1.1. 이후 고용보험에 신규가입**

④ (거주지 요건) '**21.1.1. 이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노동자**

○ (지원내용)

| 사업장 규모 | 지원내용 | 1인 지원한도/월 |
|---------------|---|-----------------------------------|
| 10인 미만 |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최대 6개월 지원 | ○ 사업주: 최대 2만원 ○ 노동자: 최대 1.4만원 |
| 10인 이상 50인 미만 |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총액의 50%, 최대 6개월 지원 | ○ 사업주: 최대 11만원 ○ 노동자: 최대 9.3만원 |

○ (지원절차)



○ (신청기간) '**21. 3. 2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ssy7617@gnepa.or.kr 전자메일 또는 경남 경제진흥원 등기 접수

○ (제출서류)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055-211-6776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노동자 고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고용 부담
NO!

사업주·노동자
4대 보험료 부담
NO!

• 세부지원내용 •

| 규모 | 지원내용 | 1인 지원한도/월 |
|------------------|---------------------------|---------------------------------------|
| 10인 미만 |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최대 6개월 | ✓ 사업주 : 최대 2.2만원 ✓ 노동자 : 최대 1.5만원 |
| 10인 이상 50인 미만 | 4대보험료 총액의 50% 최대 6개월 | ✓ 사업주 : 최대 11.6만원 ✓ 노동자 : 최대 9.8만원 |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www.gnepa.or.kr
 '21. 3. 29.(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문의 ☎ 055-230-2941~2, 055-212-6776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 211-4323)

건축허가 또는 그와 관련된 민원 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안내입니다.

□ 추진배경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 후 행정청의 불허가 사례 지속적 발생(행정심판 증가)
- 건축허가 가능여부등을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확인으로 토지매입 및 설계비에 소요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과 민원 처리기간 단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

□ 개요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건축허가 부서에 신청하면 건축허가 가능여부,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건축허가, 공장설립,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으로 청구된 민원을 심사하는 제도
- (신청방법)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 시·군 민원부서

□ 홍보내용

-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요청

붙임

건축허가 사전결정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홍보물



사전심사청구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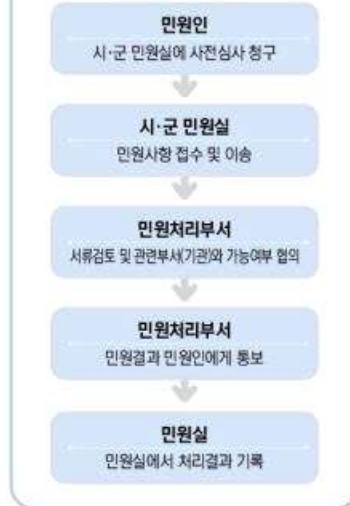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결과(가·부)를 알려줌으로써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처리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 대상민원** ▶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인·허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 운영기간** ▶ 연중
- 접수처** ▶ 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총 30일(대상민원별 상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처리절차



경상남도 | 건축주택과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Tel. 055-211-4324 Fax. 055-211-4319

같이 만드는 확신! 새로운 경남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 안내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란?

- 이 민원은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설계를 약식으로 작성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의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로, 건축물을 새로이 짓고자 하는 도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운영근거** ▶ 건축법 제10조
- 신청방법** ▶ 온라인(세움터), 방문, 우편
- 접수처** ▶ 시·군 건축허가부서
- 처리기간** ▶ 총 45일
- 수수료** ▶ 없음



누가, 무엇을 신청하나요?

건축물을 새로이 짓고자하는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내용

- 0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 02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 0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온라인 신청 방법은 ?

▶ 세움터
(<https://cloud.eais.go.kr>)

신청서 내려 받기는?

▶ 경상남도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진행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전결정제도 효력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 211-4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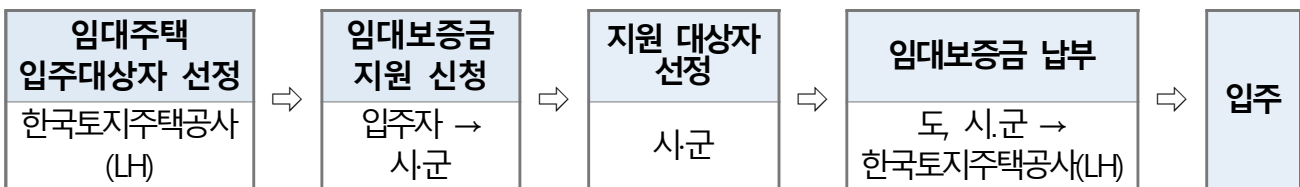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이란?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 가구에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가구
 -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 무주택가구
- 지원기간 : 1회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지원조건 : 본인부담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0백만원) 전액 무이자 지원,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지원신청 안내

| 시·군 | 연락처 | 시·군 | 연락처 | 시·군 | 연락처 | 시·군 | 연락처 |
|-----|-------------|-----|-------------|-----|-------------|-----|-----------|
| 창원 | 225-4224 | 밀양 | 359-5388 | 창녕 | 530-1386 | 함양 | 960-4813 |
| 진주 | '21년 사업 미추진 | 거제 | '21년 사업 미추진 | 고성 | 670-2275 | 거창 | 940-3606 |
| 통영 | 650-5746 | 양산 | 392-2474 | 남해 | 860-3074 | 합천 | 장기임대주택(X) |
| 사천 | 831-3218 | 의령 | 570-3533 | 하동 | '21년 사업 미추진 | 경남도 | 211-4474 |
| 김해 | 330-3919 | 함안 | 580-2714 | 산청 | 장기임대주택(X) | | |

- 각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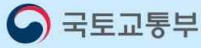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 055-211-4445)

임대인- 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임차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 신고의무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주택 : 2021. 6. 1.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
 -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
 - * 우리 도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종류 등 목적물 현황, 임대차 계약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여부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월세신고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신규, 갱신, 해제)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 제재 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 211-4433)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미등기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축물
 -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인 창원, 김해는 읍면지역만 해당)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확인서발급 신청서류(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확인서발급 신청서
- 보증서 :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명 포함)에게 보증서에 날인을 받고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대장에 등록 후 제출
-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사실증명서(등기소 발급)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에 한함)
- 기타 소유권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등

벌 칙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의사항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배제 조항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분할허가,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법무부령)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 시군구 | 부서 | 전화번호 | 시군구 | 부서 | 전화번호 |
|-----------|-------|--------------|-------|-------|--------------|
| 창원시 | 건축경관과 | 055-225-4393 | 의령군 | 민원봉사과 | 055-570-2442 |
| 창원시 의창구 | 민원지적과 | 055-212-4163 | 함안군 | 종합민원과 | 055-580-2274 |
| 창원시 마산합포구 | 민원지적과 | 055-220-4162 | 창녕군 | 민원봉사과 | 055-530-1343 |
| 창원시 마산회원구 | 민원지적과 | 055-230-4164 | 고성군 | 민원봉사과 | 055-670-2773 |
| 진주시 | 토지정보과 | 055-749-8432 | 남해군 | 민원봉사과 | 055-860-3023 |
| 통영시 | 민원지적과 | 055-650-4833 | 하동군 | 민원과 | 055-880-2093 |
| 사천시 | 토지관리과 | 055-831-2351 | 산청군 | 민원과 | 055-970-6322 |
| 김해시 | 토지정보과 | 055-330-3763 | 함양군 | 민원봉사과 | 055-960-4482 |
| 밀양시 | 민원지적과 | 055-359-5216 | 거창군 | 민원소통과 | 055-940-3832 |
| 거제시 | 토지정보과 | 055-639-3623 | 합천군 | 민원봉사과 | 055-930-3202 |
| 양산시 | 토지정보과 | 055-392-2402 | 하동구역청 | 민원행정팀 | 055-880-6464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 211-4433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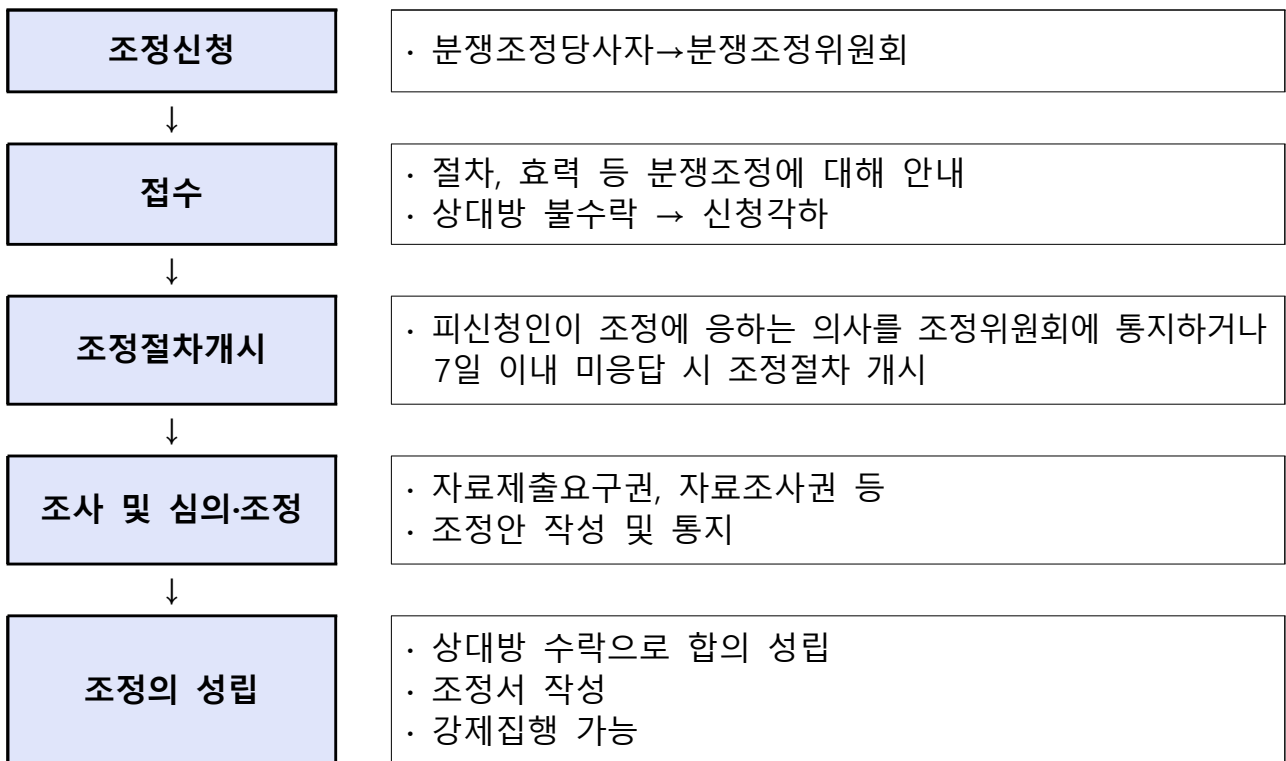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 055-211-4445)

도내 주택(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경상남도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안내해 드립니다.

□ 경상남도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운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6층
- 연락처 / 홈페이지 : 055-713-8932(상담콜센터 1670-0800) / rent-adr.lh.or.kr
- 기능 : 임대차계약상 분쟁의 상담, 분쟁 합의 도모 및 조정
- 차임·보증금 증감 및 반환 분쟁, 유지·수선의무 분쟁, (상가)관리금 분쟁 등

□ 조정절차



* **소요 기간** : 조정 신청부터 조정 성립까지 60일 이내(+30일 가능)

** **조정 효력** :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인정(미이행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 시행

(자료제공: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 211-3914)

안전한 수산물 생산,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추진

□ 수산 공익직불제란?

-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존 조건 불리지역('14년~)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친환경인증, 배합사료)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 시행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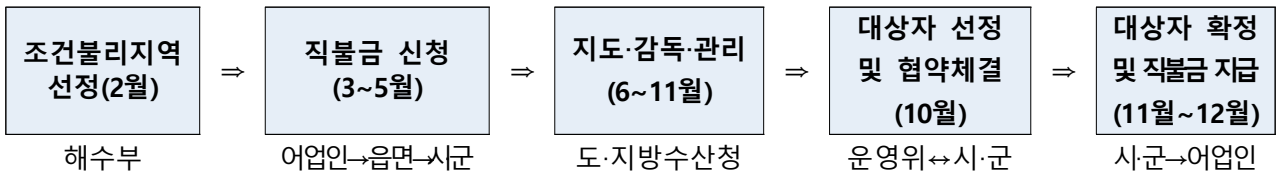
□ 주요내용

- (개 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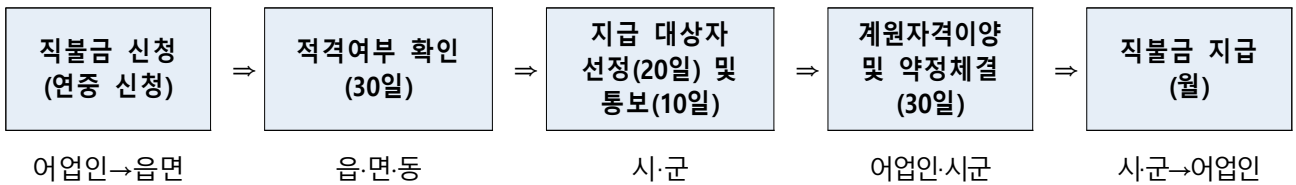
| 구분 | 지원 내용 |
|-------------|---|
| 조건불리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등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어가 지원 - 조건불리지역 고시된 연안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 어가당 연 75만원 지급 |
| 경영이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어업인 지원 - 만 65세 ~ 만 75세 미만의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 어업인 이양 -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 기준 최대 10년간 연 120만원~최대 1,440만원 지급 |
| 수산자원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보호의무(TAC참여, 휴어 등) 이행에 따른 이익감소 일부 지원 - 어선 1척당 2톤 이하 연 150만, 2톤 초과어선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 차등 지급, 개인 최대 90톤(6천만원), 법인 최대 140톤(9천250만원) |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인증, 배합사료 사용 등에 따른 양식어가에 생산비 증가분 일부 지원 - 배합사료 : 사료 1포대(20kg)당 5,420~12,390원 지급, 최대 290백만원 - 친환경인증 : 품종별·인증종류별 면적당(ha) 지급단가(530천원~273백만원/ha)에 따라 어가당 최대 60ha의 한도 내 3~5년간 지급 |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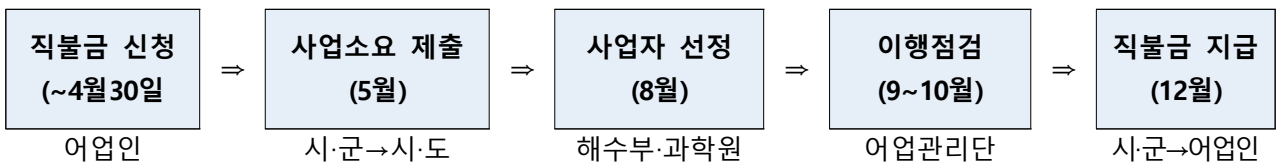
○ (조건불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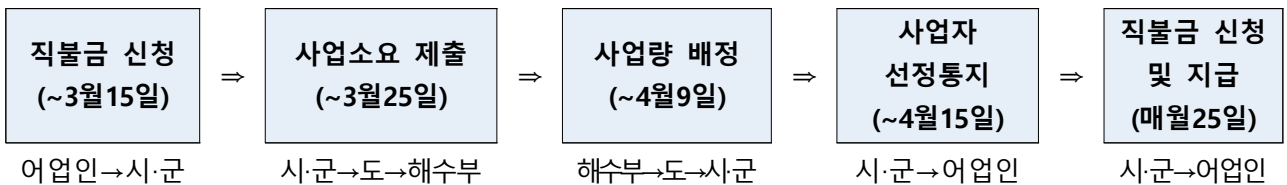
○ (경영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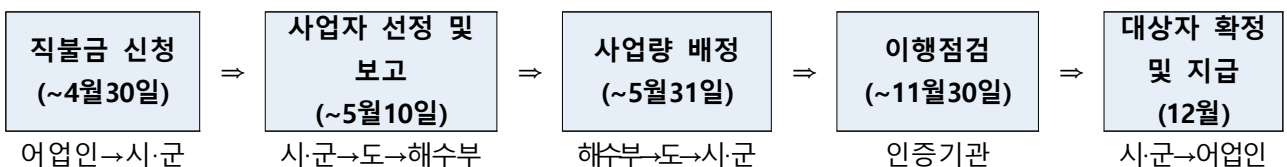
○ (수산자원보호)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 배합사료)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 친환경인증)



* 사업신청일(21.4.30) 이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절차에 의해 인증직불금 지급 가능

《 경상남도 담당부서 》

- * 조건불리, 경영이양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해양항만정책담당(☎055-211-3914)
- * 수산자원보호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어업지원담당(☎055-211-4054)
-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기술보급과(☎055-254-3542)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수산자원 보호

안전한 수산물 공급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수산공익직불제도 종류

| 구분 | 조건별대상액 | 경우 유형 | 수산자원 보호 | 친환경 수산물 생산사업 |
|----------|---|---|--|---|
| 대상 | 도서 및 경도 지역 거주 50인 | 어촌계 개편 (내수면 포함) | 어업인 어업활동, 생업장 폐사 | 어업인, 어업활동, 생업장 폐사 |
| 대상 요건 |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생산 연평균 1,200만원 이상 • 1년용 영양대형 어업 중사 | • 어촌계원 자격 미달 • 양 50세대 미만 • 선원(선장)을 위한 1인 이상 취소계원 자격을 유지 • 불산(불산)에 의한 국외지 있는 어촌계 개편 | • 준수 의무 이행 (어업인-어업인 2인 이상 50세대 이상 50인 이상) • 금해-금해 불로영양대에 대한 심각한 환경피해 | • 친환경 수산물(기타 수산물 중수) • 생사료 사용 |
| 준수 요건 | • 조건별대상액 기준 | • 해당 어촌계 명부 불합 | • 어업인 TAC 준수 • 선내-선내에 규정된, 휴어, 생물자원 연구 사용, 계원사별이 수기 등 | • 친환경 수산물(기타 수산물, 무항생제 잔류 등) • 생사료 사용 금지 |
| 대상 기준 | • 어촌계 1인당 연평균 수출 기준 • 200만원 미만 120만원 이하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60% • 2,400만원 초과 1,440만원 이하 | | • 신규 어업인(20인 이하) 15인 이하(20인 이하) • 준수(어업인 50인) 60% 이상(20인 이하) | • 연출 : 총계별 평균 2,386만원/ha • 생사료 : 2.7t-6.0t/5톤 |

* 수산공익직불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별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안내

(자료제공: 기후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211-6645)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체계 전 단계 개선을 위하여 '20.12.25부터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 홍보입니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란?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투명 페트병을 타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제도

□ 주요내용

- 관련근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 시행시기 : '20.12.25.부터 시행
- 대 상 : ('20.12.25) 공동주택* 先시행 → ('21.12.25)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전국적 확대
* (공동주택) ①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 관련 추진사항

- 환경부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균 2매의 마대 배포 중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창원,김해) 실시('20년)

| 구분 | 사업비(백만원) | 사업량(세대수) | 전단지 배부 | 전용그물망 | 전용봉투 |
|----|----------|----------|--------|--------|-----------|
| 계 | 340 | 312,345 | 29만부 | 30,056 | 2,319,410 |
| 창원 | 120 | 95,741 | 10만부 | 8,556 | 994,410 |
| 김해 | 220 | 216,604 | 19만부 | 21,500 | 1,325,000 |

□ 홍보내용

- 경남 플라스틱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생활 속에서 도민들이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요청
- 특히, 페트병 분리배출 시 압착하여 뚜껑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
⇒ 뚜껑의 경우, 재활용 과정의 세척 공정에서 비중차이에 따라 몸체와 분리가 가능하여 배출의 편의성 및 부피 저감 등을 위해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2만톤의 페페트 수입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 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플라스틱 배출함에 일괄배출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하기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파~악 뚜껑 달가

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왜 1년 뒤 시행인지?

-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
- ☞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혼합방지 대책 등을 추가로 마련 후 '21.12.25부터 시행할 예정임

② 뚜껑을 닫고 배출하라고 하는데, 뚜껑은 다른 재질이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운 게 아닌지?

- ☞ 최근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아져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음
- ☞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며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임, 이에 따라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재활용할 수 있음
 - ※ 다만,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 다만,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하는 것도 가능함

③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인 음료·생수 외에 투명한 간장통,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등도 같이 배출이 가능한지?

- ☞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같이 배출 가능함
- ☞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함
 - ※ (일회용컵) PET 외에 PS 등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다른 재질로 생산된 경우가 있고,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짐
 - (트레이) 스티커,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고, 성형을 위해 일부 순수 PET 이외의 재질(PET-G)을 혼합하여 제작한 용기가 있음

④ 분리배출보다 먼저 라벨을 떼기 쉽게 하고, 유색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 환경부는 '19.12.25일부터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고,
* 열알칼리성 수용액(NaOH 2%)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접착제
- ☞ 라벨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 등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넣도록 하고 있음
 - 절취선을 넣지 않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라벨 사용 시 ‘재질·구조 등급평가’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제품 표면에 표시하고,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강화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20% 할증
- ☞ 올해 12월부터는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생수)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20.12.4.시행), ‘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라벨이 부착된 먹는샘물(날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

⑤ 어릴 때부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는 등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닌지?

- ☞ 현재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페트병 생산·유통업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음
 - * 환경부 유튜브에 “매미킴 김동현이 알려주는 페트병 분리배출” 게시
- ☞ 아울러, 교육부와 협의하여 분리배출 전 과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

⑥ 옷 한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페페트병의 양은 얼마인가?

- ☞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이 들어가며,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 소요

⑦ 관내 아파트에서는 배포된 마대보다 작은 마대를 쓰거나, 비닐로 수거하고 있어 배포된 마대 사용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이번에 배포된 마대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크기를 배포한 것으로 전국단위로 배포가 이뤄지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배포된 마대가 아닌 기존 수거 방식을 활용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

⑧ 마대를 받지 못한 곳도 있는데 마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 자원순환 도우미가 배치된 1.5만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배송

☞ 도우미 미배치 등으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인데도 못 받은 곳 중 현재 수요조사를 마친 70개 지역 약 4천장은 12월~1월초 중 요청받은 배송지로 발송(아파트 직접 배송,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청으로 배송)할 예정

⑨ 배포된 마대인 단지당 2매는 대단지 등에서는 사용하기에 양이 너무 부족한데 추가 배포 계획이 있는지?

☞ 현재 추가로 3.6만매를 제작하고 있으며, 1월 중 집중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1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 추가 배포는 지자체별 공동주택 세대수, 배출하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으로 직접 발송할 예정(추후 1월 중 공문으로 안내)

☞ 추가로 기존에 배출장소마다 설치된 플라스틱 수거함 2~3개 중 1개를 페트병 전용으로 표시해서 사용하면 추가 마대 없이도 가능함을 안내하고

☞ 추가로 필요하다면 아파트단지 등에서 마대를 추가로 구비하여 협조해 달라고 요청

* 현재 배포하는 마대는 다회용이긴 하나, 제도 초기 정착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후 별도 배출을 위한 마대는 배출자가 구비 필요

⑩ 배포된 마대를 무시하고 수거업체에서 혼합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합수거 및 혼합배출에 대한 민원이 다량 있을 것으로 예상
- ☞ 관할 내 공동주택에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자 신고제도에 따라 페트병이 별도 신고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점을 안내하면서 별도 배출이 불가피함을 안내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별지 제4호의9서식
- ☞ 수거업체에는 혼합수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도록 규정, 이를 위반 시 법 제66조 제1호,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의 2. 다. 6)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으나, 처벌 시 수거 공백, 법적다툼 지속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규정의 언급보단 협조를 우선적으로 요청
- ☞ 지속적인 비협조 시 추후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수거체계 관리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⑪ 배포되는 마대 크기와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 12월 아파트 배포 마대 | 추가 배포예정 마대 |
|---|--|
|  |  |
| <p>사이즈(cm) : 90(가로)×90(세로)×120(높이)</p> | <p>사이즈(cm) : 100(가로)×100(세로)×145(높이)</p> |

도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오존 행동 요령 안내

(자료제공: 기후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211-6705)

일사량 및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오존 농도 상승 및 오존 주의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오존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 오존이란?

- 오존(O₃)은 산소분자(O₂)에 산소원자(O)가 더해진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로 상층의 오존은 해로운 단파장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 근처의 오존은 인간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해로운 물질

□ 오존 예보등급과 행동요령

| 예보구간 | | 등급 | | | |
|-----------|----------------|---------|-----------------------|--------------------|-----------------------------|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예측농도(ppm) | O ₃ | 0~0.030 | 0.031~0.090 | 0.091~0.150 | 0.151이상 |
| 행동요령 | 민감군 | - | 실외활동 가능하나 몸상태에따라유의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 가급적 실내활동 |
| | 일반인 | - | -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 실내생활 권고 |

※ 오존예보가 '나쁨'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에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오존 반복 노출 시 눈과 기관지에 피해를 입으므로, 호흡기 환자·어린이·노약자는 특별히 조심한다.

□ 오존 대응 6대 수칙

-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 수시 확인한다.
-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하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는 주의한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실외수업 자제 또는 제한한다.
-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을 줄인다.
-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한다.

□ 오존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또는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



“오존”

바르게 알고 대비해요!



오존이란?

- 오존(O₃)은 산소분자(O₂)에 산소원자(O)가 결합된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이다.
- 성층권의 오존은 해로운 단파장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지표 근처의 오존은 인간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해로운 물질**이므로 오존이 높은 날에는 조심해야 한다.

오존 예보등급과 행동요령

| 예보구간 | 등급 | | | |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예측 농도 (ppm) | O ₃ 0~0.030 | 0.031~0.090 | 0.091~0.150 | 0.151 이상 |
| 민감군* | - | 실외활동 가능하나 몸 상태에 따라 유의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 가급적 실내활동 |
| 행동 요령 | 일반인 | -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 실내생활 권고 |

*오존 환경기준 : 8시간 0.06ppm, 1시간 0.1ppm,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이혼



오존 피해를 줄이는 건강 수칙

오존 예보가 '나쁨' 이상인 경우

맑고 더운 날, 바람이 없고 건조한 날씨의 오후 2~5시에는 야외활동을 피한다. 오존 반복 노출 시 눈, 기관지에 피해를 입으므로,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는 오존 농도가 높은 날 특별히 조심한다.

오존 경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오존 경보 발령 상황을 인터넷, 방송, 모바일 앱 등으로 확인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오존 저감을 위한 실천 사항

- ▶ 오존 예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한다.
- ▶ 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을 자제한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심장질환자는 주의를 기울인다.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 또는 제한한다.
- ▶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너 사용을 줄인다.
- ▶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한다.

미세먼지 비상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자료제공: 기후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211-670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인 5등급 자동차의 도심지 운행제한 필요성 및 친환경전환 유도를 통한 노후차량(저공해 미조치) 제로화 추진
- ※ 올해 전국 17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전격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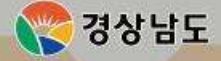
□ 개요

- (시행시기) '20. 11 1. 이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年 2~4일 추정
 - 익일 06 ~ 21시 시행(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mu\text{g}/\text{m}^3$ 를 초과 시 발령
-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전국) * 도내 167천대('20.9월 기준)
- (제한지역) 창원, 진주, 김해, 양산(4개 시)
 - 전 시·군 단계별 시행(인구 30만 이상 시 우선 추진)
- (제한방법) 59개 지점 75대 무인단속시스템(cctv)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영업용 자동차 등
- (위 반 시) 10만원/일(1일 1회 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
 - ※ 단, '21. 12. 31.(계도기간)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홍보내용

- 1833-7435(콜센터) 및 055-114에서 5등급 여부 확인 가능하며, 5등급 차주께서는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 협조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 필요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환경과에 문의 바람
- 타 지역 운행 시 발령시기 및 단속기준이 상이하여 해당 지역의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에서 확인

맑게 만드는 최선의 새날은 경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시행일

'20년 11월 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까지 운행제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전국 대상)

제한지역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전 시·군 단계별 추진 예정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단, '21,12,31,(계도기간)까지 한시적
과태료 부과 유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확인하기

검색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한우산업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추진 및 홍보

(자료제공: 농정국 축산과 ☎ 211-6524)

한우 사육두수 과잉으로 인한 전국 한우 사육두수 300만두 초과로
 12 경남 한우 사육두수 30만두 초과
 '23~25년 전후 한우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추진 및 홍보

□ 한우사육 및 가격동향

(단위 : 두, 천원)

| 구 분 | | '16.12월 | '17.12월 | '18.12월 | '19.12월 (A) | '20.12월 (B) | 전년 대비(B-A) |
|-------------|----|---------|---------|---------|----------------|----------------|------------------|
| 사육두수 | 전국 | 2,809 | 2,871 | 2,961 | 3,078 | 3,199 | 3.9% ↑ (121천두 ↑) |
| | 경남 | 286 | 288 | 290 | 294 | 301 | 2.4% ↑ (7천두 ↑) |
| 산지가격(600kg) | | 5,650 | 6,130 | 6,449 | 6,921 | 7,428 | 7.3% ↑ (507천원 ↑) |

* 자료 : 통계청(가축이력제) 통계, 축산물품질평가관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사육) '13~'15년 사육감소 이후 지속 증가세'23년까지 337만 마리 전망
 * 경남 한우사육(만마리) : '16) 28.6 → '18) 29 → '20) 30.1
- (도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도축물량 지속 증가
 * 전국 도축전망(만마리) : '20) 76.3 → '21) 83.1 → '24) 98.5(평년 대비 31.7%↑)
- (시세) 코로나19 영향, 수입 감소 및 가정식 소비증가로 상승세 지속

□ 대책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21년 12월 말까지 * 필요시 연장
- 대상기관(단체) : 행정(도, 시군), 한우협회(농가), 지역축협 등
- 주요내용
 - 지자체 및 한우협회(단체) 실정에 맞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
 - 한우 사육조절 시책(사육 확대시책 감축) 추진
 - 한우 수급안정 민관협력 및 교육·홍보 강화 등

□ 협조사항

- 한우 수급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홍보) : 시·군
-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실적 제출 : 매 분기별 1회(시·군 → 도)

< 한우 수급 전망 알림 >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우관측('21.3월호)

- ▶ (사육) '23년말까지 한우 총사육마릿수는 가임암소수 증가에 따른 송아지 생산 확대 등으로 평년대비 약 12% 증가한 332.5만마리 수준으로 증가 전망

(단위: 천마리)

| 구분 | 평년('16~'20)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전체마릿수 | 2,970 | 3,078 | 3,200 | 3,325 | 3,371 | 3,373 |
| 가임암소수 | 1,428 | 1,484 | 1,547 | 1,612 | 1,625 | 1,608 |
| 1세미만 수 | 867 | 906 | 934 | 950 | 992 | 1,002 |

- ▶ (도축) 도축마릿수도 개체수 확대에 따라 '23년까지 평년대비 약 27% 증가한 95.2만마리 전망

* 도축마릿수 : (평년) 74.8만마리, ('20) 76.3 → ('21) 83~84 → ('22) 90.5 → ('23) 95.2

- ▶ (수요) '22년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도축물량 확대 등으로 인해 '21년 2~4분기 전망 수준(평균 17,500~18,500원/kg 내외) 이하 형성 전망
 - '21년 2~4분기 도매가격은 설 성수기 이후 공급(도축) 증가로 인해 '20년 대비 약 10% 내외 하락한 17,500~18,500원/kg 내외(평년대비 약 ±3.0%) 전망

(단위: 천마리, 원/kg)

| 구분 | 한우 도축 마릿수 | | | | 한우 도매가격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21년(A) | 187.6 | 189.4 | 231.6 | 222.2 | 19,500~20,500 | 18,000~19,000 | 18,000~19,000 | 16,500~17,500 |
| '20년(B) | 188.2 | 181.1 | 216.8 | 176.7 | 19,030 | 20,041 | 20,387 | 20,069 |

☞ '21.1분기 이후 송아지 입식 등으로 도축이 예상되는 '23.1분기 출하량 증가로 도매가격 하락 예상 ⇒ 신중한 입식 및 번식계획 등 조정 필요

※ (당부)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한우농가 스스로 저능력 경산우, 미경산우 감축 및 송아지 입식물량 조정 등 적극 동참 요청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자료제공: 농정국 동물방역과 ☎ 211-6563)

올해 첫 시행하는 도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 추진배경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
- 경제적 사정으로 반려동물의 치료 적기를 놓치는 사례 빈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량 : 5,000가구
- 사업비 : 1,200백만원(도비 300_(25%), 시군비 600_(50%), 자부담 300_(25%))
- 사업내용 : 저소득계층 연 24만원 지원(등록비 포함)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조건 : 주민등록상 경남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반려동물소유자
내장형 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 지원절차
 - 선정 대상자는 도내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 전액 수납
 -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후, 진료 영수증 발급
 - 진료 영수증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관할 시군(읍면동)에 보조금 신청
 - 시군(읍면동)은 서류검토 후, 자담(25%) 제외한 진료비 계좌 입금



- | 지원조건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를 갖고 있는 반려동물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사업내용 가구당 연 24만원(등록비 포함)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25%) 있음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에 문의 바람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안내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211-2515)

도내 신규 창업법인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사업장 방문 등으로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 등 가중되는 어려운 경기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사업의지가 좌절되지 않고,
- 창업초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사업에 전념토록 든든한 지방세 조력자 필요

□ 주요내용

- 기 간 : 2021. 4. 1.(월) ~ 연중
- 대 상 : 2021년 이후 신규 등록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방 법 : 신규 사업장에 방문(또는 유선) 지방세 멘토링
- 멘 토 : 경상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내 용
 - 창업 초기 사업체가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
 - 예비사업자를 위한 인·허가부터 폐업시 필요한 절차적 지방세 안내
 - 사업체의 규모·업종·면적에 관련된 사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
 - 사업 안정 단계까지 지방세관련 고충 지속 상담·해결
 - 지방세 구제철자 및 방법 및 지방세 절세 팁 정보 등
- 신청방법 : 팩스(211-2519)·방문·우편 등을 통한 신청서 제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역할

- ✔ 고충민원 해소
- ✔ 납세자 권리보호

권한

-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문의

경상남도청 법무담당관 055-211-2515

디지털 배움터(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안내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정보담당관 ☎ 211-2614)

코로나시대에 필수적인 디지털 생활을 위한 무료 교육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교육대상 : 경남도민 누구나
- 교육비용 : 무료
- 모집/교육기간 : 연중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교육 내용 |
|--------|---|
| 디지털 기초 | - 스마트 기기(스마트 폰, 태블릿, AI 스피커 등), 비대면 화상솔루션, SNS 등의 사용법과 활용 역량 향상을 통하여 디지털과 친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 디지털 생활 | - 키오스크(무인주문), 교통, 금융, 전자정부(복지서비스, 지원금신청, 정부24)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경제·사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학습하는 과정 |
| 디지털 중급 | - 경제·사회활동과 직접 연계되거나 일정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등 자기주도의 디지털 학습이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
| 특별교육 | - 1인 미디어 활동(유튜버, 팟캐스트 등), 신기술 체험(3D프린팅, 드론, 코딩, AI, 데이터전처리 등) 등 체험체감형 프로그램 |

※ 코로나19 완화 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및 화상 교육으로 진행

- 가까운 디지털 배움터 찾아보기 : www.디지털배움터.kr
- 교육 신청 등 문의(콜센터) : 1800-0096
 - 온라인 신청 : eduhelp.ktcs.co.kr/gyeongnam
- 교육혜택 : 교육수료자에게 추첨을 통해 매월 소정의 기념품 증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안내(경남스마트심센터)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정보담당관 ☎ 211-2617)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입니다.

☐ 경남스마트심센터 이용안내

- 대 상 : 유아동, 청소년, 성인(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 이용방법
 - 전화상담 : 1599-0075(전국), 055)211-7333~5(경남) (평일 9~18시)
 - 내방상담 (전화, 온라인 예약 필요)
 - 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실시(평일 9~18시)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경남연구원 1층 102호
 - 가정방문상담
 - 전화·온라인 신청 후 상담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

※ 모든 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

☐ 인터넷 및 스마트폰 바른사용 실천 가이드

- 편한자세보다 불편해도 ‘바른자세’가 좋아요
- 스마트폰을 ‘약속된 장소’에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요.
-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얼굴보며(eye-contact)’ 대화해 보세요.
- (보행·이동 시) ‘안전하게’ 가방에 꼭 넣어요.
- (공공장소 등) 통화, 음악감상, 동영상 시청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본매너’를 실천해요.
- 자신(자녀)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QR코드를 통한 자가진단)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자료제공 : 재난안전건설본부 건설지원과 ☎ 055-211-2923)

도내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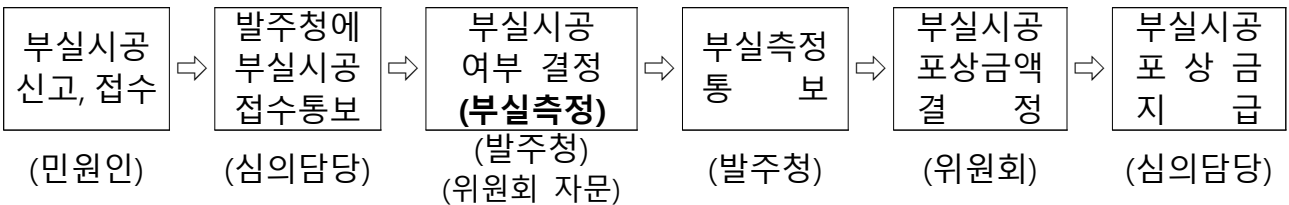
□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란?

-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실시공 신고대상은?

-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이며 포상금 지급대상은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도급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입니다.

□ 처리절차



□ 포상금 지급기준

| 부실시공 등급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 포 상 금 지급기준 |
|---------|---|------------|
| 1 등급 | 벌점 3점 | 1,000만원 이하 |
| 2 등급 | 벌점 2점 | 600만원 이하 |
| 3 등급 | 벌점 1점 | 200만원 이하 |
| 해당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없음 |

□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함)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3,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 신고서식 : 붙임서식 작성 후 제출

| 부실시공 신고서(제8조 관련) | | | | |
|--|------|--|--------|-------|
| 신 고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주 소 | |
| 신고공사 | 사업명 | | 현장 위치 | |
| | 공 종 | | 발생일자 | 년 월 일 |
| 부실시공 내 용 | | | | |
| 증빙서류 | | | | |
| 비 고 | | | | |
| <p>「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 | | | |

태풍 등 풍수해 발생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자료제공: 재난안전건설본부 자연재난과 ☎ 211-2835)

풍수해와 지진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때 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하여 재난을 대비합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재고자산)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소유자 외 세입자도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드립니다.
- ☞ (정부지원율) 주택·온실 70%, 소상공인 70%, 취약지역* 87% 지원
- *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 소상공인 우대혜택은?

- 보험가입 증권(사본)으로 아래의 우대혜택(중복가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
|-----|---|------------------------------------|
| 혜택 | 1.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평균 1.2% > 0.8% | 대출금리에서 0.1% 우대적용 ☞ 대상: 6종의 정책자금 |
| | 2.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일반 85% > 90% | |
| | 3. 5천만원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 약식평가, 한도상향 등 우대적용가능 | |
|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1588-736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 가입문의

- 시·군청 재난부서, 읍·면·동 풍수해보험담당자, 5개 판매보험사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
| 02)2100-5103 | 02)2100-5104 | 02)2100-5105 | 02)2100-5106 | 02)2100-5107 |

붙임**풍수해보험 주요 보상사례** 주택

| | | | | |
|----|-------|--------------|----------------|--------------------------------|
| 가입 | 목적물 | 주택 | 지역 | 남해군 |
| | 총보험료 | 41,900원 | 가입자부담 | 19,900원 |
| | | | 보험료지원 | 22,000원 |
| 피해 | 피해일자 | 2019. 9. 22. | 피해유형 | 태풍 |
| | 손해구분 | 전반파 | 피해면적 | 33m ² |
| 지급 | 지급보험금 | 33,750,000원 |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 반파 6,500,000원 (보험금이 5.2배 큼) |

 온실

| | | | | |
|----|-------|--------------|----------------|---------------------|
| 가입 | 목적물 | 온실(비닐하우스) | 지역 | 밀양시 |
| | 총보험료 | 2,895,500원 | 가입자부담 | 243,200원 |
| | | | 보험료지원 | 2,652,300원 |
| 피해 | 피해일자 | 2016. 10. 5. | 피해유형 | 태풍 |
| | 손해구분 | 소파 | 피해면적 | 1,650m ² |
| 지급 | 지급보험금 | 15,859,800원 |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 소파는 재난지원금 미지원 |

 소상공인

| | | | | |
|----|-------|--------------|----------------|--------------------|
| 가입 | 목적물 | 소상공인 재고자산 | 지역 | 포항시 |
| | 총보험료 | 81,300원 | 가입자부담 | 40,200원 |
| | | | 보험료지원 | 41,100원 |
| 피해 | 피해일자 | 2019. 10. 3. | 피해유형 | 태풍 |
| | 손해구분 | - | 피해면적 | - |
| 지급 | 지급보험금 | 30,000,000원 |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미지원 |

(자료확인) 재난안전포털(www.saferkorea.go.kr)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자료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상가 /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은실 소유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공장 주택 은실 상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

| | |
|-----------|-------|
| 70% ~ 92% | 정부 지원 |
| 5.0% | 보험료 |
| 3.0% | 보험료 |

* 일반 70%, 최상위 계층 78.4%
기초생활수급자 87%, 재해취약지역 주택 87%
소상공인 10% 기본지원
(2021년 기준)



가입방법은 5개 보험사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풍수해보험 > 가입과 사고신고 > 보험사소개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삼성화재생명보험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2021년부터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지금 바로 웹툰으로 쉽고 재미있게 확인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자료제공: 자치행정국 행정과 ☎ 211-3627)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감증명서보다 발급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 함 ※ 대리발급 불가
- 신청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 발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발급절차
 - ① 신청인이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 → ② 신청인으로부터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정보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 ③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 ④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및 신청인(법정대리인 등 포함) 확인(전산관리시 서명 불필요) → ⑤ 확인서 교부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전자서명 최초 등록을 위해 읍·면·동 방문
- 발급절차
 - ①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등 방문) → ② 발급시스템접속 → ③ 본인확인(공동인증, 복합인증) → ④ 확인서 작성 → ⑤ 공인전자서명 → ⑥ 확인서 발급(시스템내 저장) → ⑦ 발급증 출력·제출 → ⑧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민원처리(수요기관)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 김본인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은행, 정기소, 저축은행사업소 등 병입할 수요처에 제출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서양권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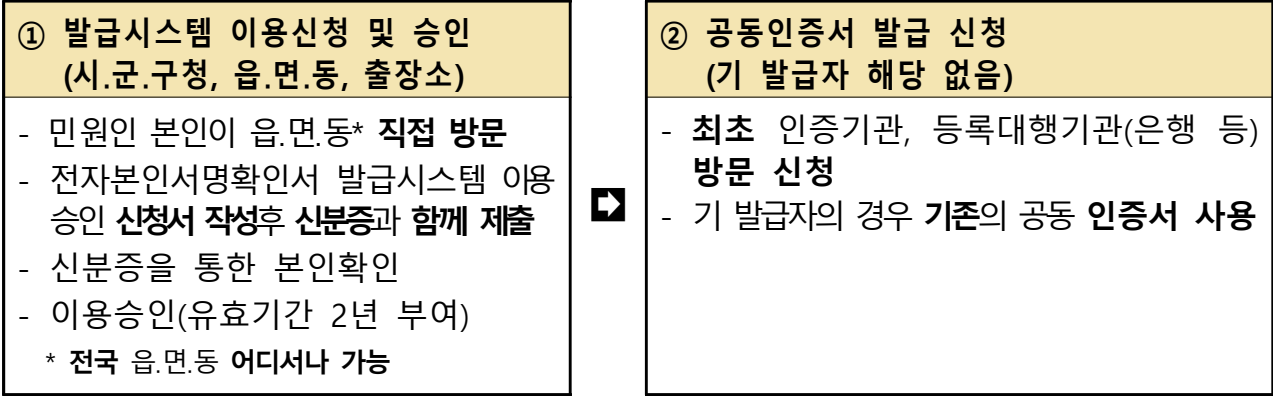
3 인감사고 사전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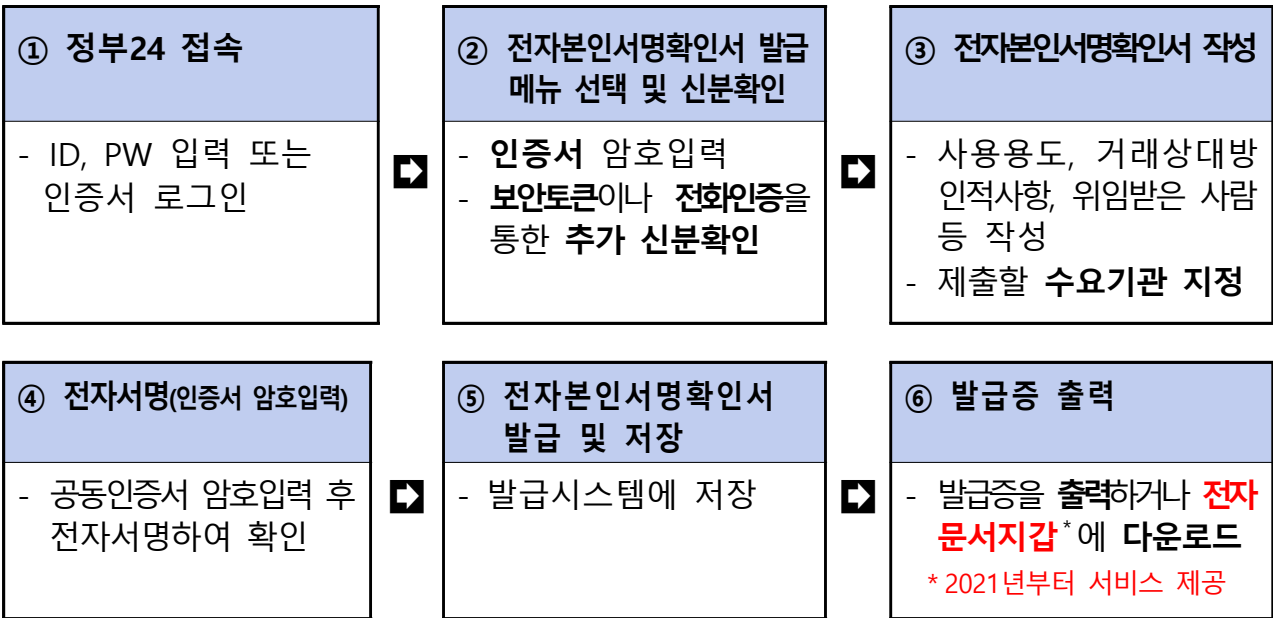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www.gov.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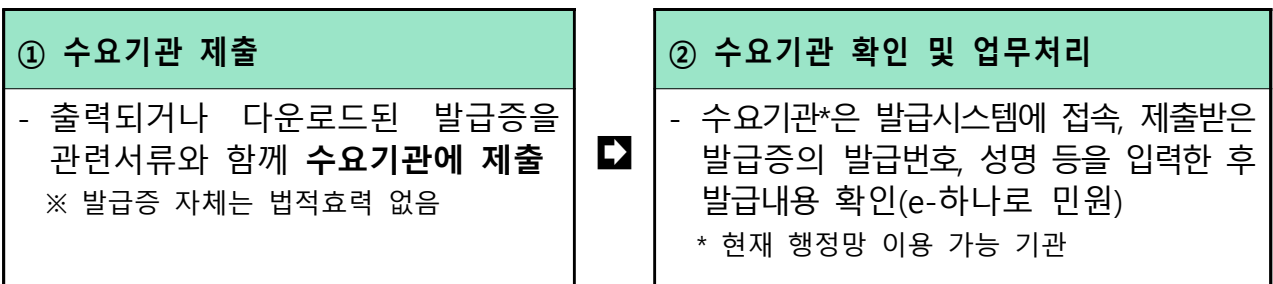
1. 사전절차



2. 발급절차



3. 활용절차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안내

(자료제공: 여성가족아동국 가족지원과 ☎ 211-5263)

개별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안내입니다.

□ 추진배경

-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서비스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일일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
-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21. 4. 19. ~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누구나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방 문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 서비스 문의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임신지원 서비스
 - 전국공통 서비스 :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맘편한 KTX, 위기 임신 전문 상담,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 지자체 서비스 : 임산부 주차증 등 지자체별 제공 내역이 다름
- 택배서비스 지원 : 엽산·철분제 등 물품서비스 제공(선결제시 요금 할인)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2021년 4월 19일부터
전국 실시합니다!



Q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란?

A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 임신제 지원
- 월분제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연금가입자
- 에너지바우처 의료·보건·간접지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맘편한 KTX 일반·특급 노선(비이동)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개별서비스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임신제, 월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자체 서비스 지역별 차이가 있음

지역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수급자 제외 - 월분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 가능, 의료급여권 임신부 본인 부담금 소

Q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 기준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방문 신청, 신분증

* 의료급여수급, 산모 연령에 건강관리지원 신청서 작성(산모수첩) 또는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2021년 4월 19일부터
전국 실시합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란?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



구비서류

온라인 공동인증서

방문 신분증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문의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안내 ✦

전국공통 서비스

-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맘편한 KTX **일반** · **특실 업그레이드**
- 위기임신 전문 상담

일반 서비스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의료 생계급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 출산 전후 유산산 휴가급여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안내

지자체 서비스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 내역이 다름



기형아 초음파·막달 검사, 건강검진,
가사도우미, 부부출산준비교실 등



신생아용품, 비타민 등 영양제,
튼살크림, 임산부 주치증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주치료 감면,
출산준비금 지원, 검진비 지원 등

✦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 엽산제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맘편한 KTX **일반** · **특실 업그레이드**
- 철분제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의료 생계급여**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택배서비스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자체 서비스(임산부 주치증, 임신축하용품 등)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택배 신청시 엽산·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자료제공: 여성가족아동국 가족지원과 ☎ 211-5263)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시행시기 : 2021. 5. 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신청문의 : 상세 소득판정 기준 및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국민연금 119
힘겨울면 129

'21.5.22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통합형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 **150%이하로 확대**

* 2021년 4인기준 소득 7,314,000원

시행시기

'21.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서비스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문의

상세 소득판정 기준 및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방법 등 안내

(자료제공: 여성가족아동국 아동청소년과 ☎ 211-4274)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개념, 처벌, 유형, 신고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이상 징역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유형/징후 | 신체적 징후 | 행동적 징후 |
|-------|--|--|
| 신체학대 | 발생회복 있어 시간차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손바닥, 발바닥, 등, 엉덩이에 담뱃불자국, 양말모양 등 상처, 화상자국, 묶은 줄 화상 등 | 어른과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부모가 손상을 알려줌 |
| 정서학대 |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 | 특정물건에 대해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음, 반사회적 및 파괴적 행동장애 수면장애, 극단행동, 지나친 행동 등 |
| 성 학대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임신 등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 기괴하고 미묘한 성적 행동과 지식 친한 친구가 없음, 비행, 가출 등 |
| 방임 | 지속적인 배고픔, 나쁜 위상상태, 부적절한 옷차림, 의학적 치료와 치과치료 부족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수업 중 조는 태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장시간에 걸친 감독소홀, 비행 또는 도둑질 등 |

□ 아동학대 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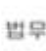



| | |
|-------|---|
| 언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 무엇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p>※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토록 합니다.</p> |
| 어떻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시·군청, 경찰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 -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p>※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p> |



이 포스터는 2017년 제 3회 아이지킴콜 112 콘테스트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아이지킴콜 112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수상함이 느껴진다면 조금만 용기 내어 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지킴콜 112,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있는 신고입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지킴콜112 앱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모바일앱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동학대' 또는 '아이지킴콜112'를 검색하세요!

에너지 절약하고, 경남사랑상품권' 받아주세요!

(자료제공: 산업혁신국 에너지산업과 ☎ 211-3574)

그린뉴딜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경남도의 에너지 절감 시책'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대상* 중 경남DR(Demand Response) 및 국민DR 신청 세대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대상(스마트 미터 무상교체)

- ① 개별세대와 한전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인력 검침중인 아파트의 기계식 또는 전자식 전력량계(재개발·재건축 예정 제외)
*시공업체(누리플렉스) 현장실사 후 확정
- ② 필수 제공 동의서 : 계약서(입주자대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주민), 국민DR, 경남DR 참여 동의서

- 사업내용 : 스마트 미터 무상교체, 도민 참여형 에너지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에너지사용정보 제공과 경남DR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마일리지 적립(회당 2.5천원) 및 경남사랑상품권 전환 지급(최소 발행단위 5천원)

□ 경남DR 운영계획

- 감축발령 횟수 : 국민DR 포함 주 1회 이상 * 월4회 정도
 - 발령기준 : 전력수급비상 준비 또는 관심단계, 도내 미세먼지등 '나쁨' 이상 예상 될 때 등
 - 지급금액/방법 : 2,500원(회당) 마일리지 적립 및 경남사랑상품권 전환 지급(최소 발행단위 5천원)
 - 성공기준 : 고객기준부하(CBL*) 기준 10% 이상 절감 시
- * CBL(Customer Baseline Load) : 최근 평일 6일을 참고일로 하여, 4일을 유사일로 MID(4/6)방식과 최근 평일 10일을 참고로 하고 8일을 유사일로 하는 MID(8/10)방식을 도입하여 세대별 감축량을 산출
- 경남DR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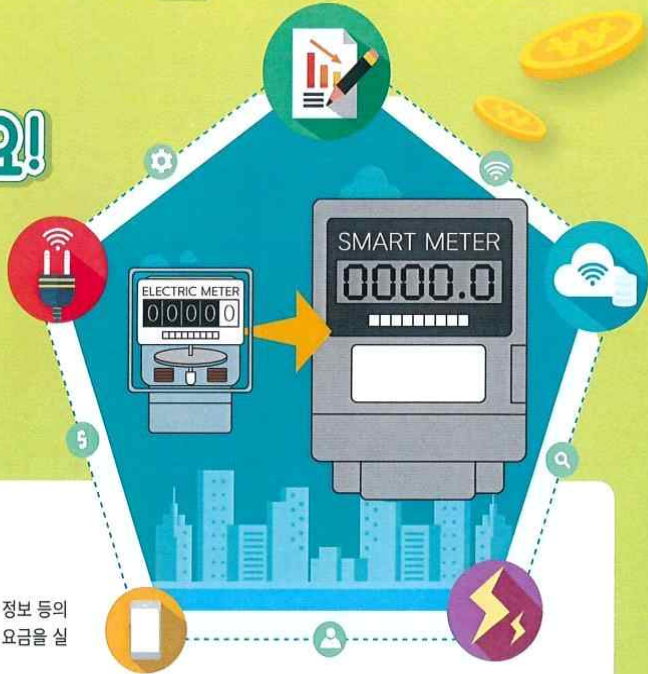


□ 홍보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도민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스마트계량기로 바꾸면 전기도 줄이고, 돈도 벌수있어요!

66 아파트 노후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AMI)로
무상교체 해드립니다. 99



01 스마트계량기란??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라고 부르는데요,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전기 사용량과 시간대별 요금 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02 교체고객에 한해서 경남DR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남DR : 경상남도에서 과도한 전력소비발생 등으로 사용자에게 전기사용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고 사용자는 전기소비를 줄이고 이에 따른 보상을 얻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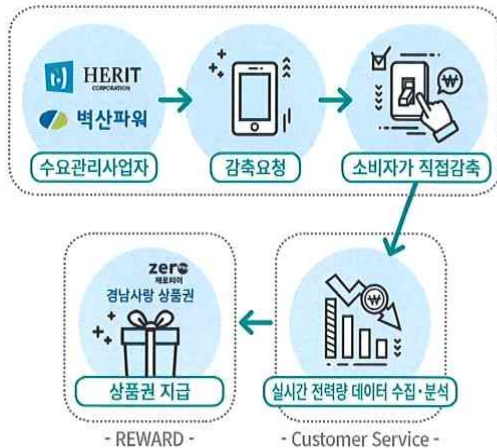
| 구분 | 비고 |
|--------------|---|
| 참여가능고객 | • AMI 교체 설치 대상 중 경남DR 및 국민DR 신청 세대 • 스마트폰 소유자 (신청자와 핸드폰 명의자가 동일해야 상품권 지급 가능) |
| 감축지속시간 | • 1시간 |
| 감축지시 발령 사전안내 | • 감축 30분 전 감축지시 발령 |
| 감축발령 시간 | • 평일 6시~21시 |
| 감축발령 횟수 | • 2021. 5월부터 ~ 12월 까지 참여 가능 • 경남DR과 국민DR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
| 급전지시 발령 요건 | • 직전 등 기간 전력수급 대책 기간의 최대전력 갱신하거나 예상될 때 •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전력부하감축이 필요할 때 • 미세먼지 등급 '나쁨' 이상 예상 될 때 • 서비스 운영을 위해 수요감축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등 |
| 감축보상 | • 경남DR 실적금 : 감축시간에 CBL대비 10% 이상 절감 시 2,500원/1회 해당하는 마일리지 적립 후 경남사랑상품권으로 교환(매회참여가능) |

03 CBL(Customer Baseline Load)이란?

"고객 평균 전력사용량"을 뜻하는 용어로, 미션 수행 시 감축하는 전력 양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본 사업에서의 CBL 측정방식 : 최근 평일 6일을 참고일로 하여, 4일을 유사일로 mid(4/6)방식과, 최근 평일 10일을 참고일로 하고 8일을 유사일로 하는 mid(8/10)방식을 도입하여 세대별 감축량을 산출

- DR(Trade in the Electricity Market) -



문의처

스마트계량기 교체문의 : 누리플렉스 T. 02-781-0606

경남DR운영문의 : 헤리트 T. 031-606-7150, 벽산파워 T. 02-767-6436

경남 마산 로봇랜드 방문·이용 및 홍보 협조

(자료제공 : 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 ☎ 055-211-4183)

세계 최초 로봇 테마파크인 경남 마산로봇랜드('19. 9. 7. 개장)에 도내 지역 주민·기업체의 적극적인 방문·이용 및 홍보를 통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북·반동리 일원(1,259,890㎡)
- 사업기간 : 2009 ~ 2021년 *1단계 개장 2019. 9. 7.
- 사 업 비 : 7,000억원(국비 560, 도비 1,000, 시비 1,100 민자 4,340)
- 단계별 사업내용
 - 1단계 : (공공)R&D센터, 컨벤션센터, 전시·체험시설 / (민간)테마파크
 - 2단계 : (민간)호텔, 콘도 등 관광 숙박시설 ※조성예정

□ 주요시설

- (테마파크) 공공부문 로봇 전시·체험시설과 민간부문 놀이기구로 구성
 - (공공) 로봇 전시·체험 16개 콘텐츠(우주, 해양, 산업 로봇 등)
 - (민간) 놀이기구 22종(65m 자이로드롭, 수직하강 롤러코스터 등)
- (컨벤션센터) 로봇 전시·홍보·판매 행사 및 각종 회의 개최(연면적 6,449㎡)
 - (전시장 1개소) 기업 및 공공기관 전시·홍보 행사, 경진대회 등
 - (회의실 2개소) 공공기관 및 기업체 워크숍, 회의, 교육 공간 활용
- (R&D센터) 로봇 기업 연구·개발 및 테스트 공간(지상 3~4층, 3개동)
 - 입주기업에 대해 심사 후 연구개발 자금 지원(1억 원 이내)

□ 협조사항

- 경남 마산로봇랜드 적극 방문 및 홍보 협조
 - 주민, 공무원, 기업체, 학교 등 대상 테마파크 방문 및 컨벤션센터 대관
 - 지역 소재 로봇 기업·단체 대상 로봇 R&D센터 입주 홍보

참 고

로봇랜드 시설별 상세내역

□ 주요시설 전경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R&D센터

□ 이용안내

※ 이용문의 : 경남로봇랜드재단(055-711-2123)

○ 테마파크 운영시간 : (동절기) 10:00 ~ 18:00 (계절별 탄력 운영)

| 구 분 | | 어른 | 청소년 | 어린이 | 비 고 |
|-----|------------|---------|---------|---------|--|
| 개 인 | 종일권(1일) | 35,000원 | 31,000원 | 27,000원 | <주요 할인혜택> - 농협카드50%, 창원시민(20%), - 경로우대, 임산부, 다문화가정 ※ 상세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robot-land.co.kr) |
| | 오후권(2시이후) | 26,000원 | 23,000원 | 20,000원 | |
| 단 체 | (15인 이상) | 23,000원 | 20,000원 | 18,000원 | |
| 입장권 | (공공관 이용가능) | 16,000원 | 13,000원 | 10,000원 | |

○ 컨벤션센터 대관료

(부가세 포함)

| 구 분 | 1일 대관료 | 관리비예치금 | |
|------------|------------|----------|----------|
| 전 시 장 | 3,161,400원 | 대관료의 30% | |
| 중회의실 (A+B) | 2,280,000원 | 회 의 | - |
| | | 그 외 행사 | 대관료의 30% |

* '21년 12월까지 대관료 50% 감면, 식사(케이터링 제공) 및 시내 숙박시설 연계 가능

□ 테마파크 상세시설

○ 공공부문 : 로봇 테마 콘텐츠 11종 + 신규 콘텐츠 5종('20.12월 도입)

| | | | |
|---|---|--|---|
| 로봇스쿨 | 인공지능로봇관 | 로봇극장 | 해양로봇관 |
|  |  |  |  |
| 로봇판타지아 | 로봇산업관 | 제조로봇관 | 로봇조형물 |
|  |  |  |  |
| 우주항공로봇관 | 로봇사피언스관 | 미래로봇관 | 다목적홀 |
|  |  |  |  |

○ 민간부문 : 놀이시설 22종

| | | | | |
|---|---|---|--|---|
| 쾌속열차 | 스카이다워 | 새로운항해 | 파도여행 | 회전그네 |
|  |  |  |  |  |
| 별자리여행 | 회전기어 | 증기범퍼카 | 로코선장해적선 | 티파티 |
|  |  |  |  |  |
| 어린이관람차 | 어린이타워 | 로봇친구들 | 로사와친구들 | 점핑봇 |
|  |  |  |  |  |
| 날으는 로봇 | 어린이제트 | 콘보이 | 숲속열차 | 어린이범퍼카 |
|  |  |  |  |  |
| 정글목마 | 해피스윙 | 메인공연장 | | |
|  |  |  | | |